

# 시멘트·건설 관련 정책 및 법률 정보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최근 발생하고 있는 층간소음, 결로, 새집증후군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주택을 쾌적하고 안전한 거주 환경으로 만들기 위하여, 공동주택 바닥 구조기준이 강화되고, 창호와 벽체에 대한 결로 방지 기준이 신설되며, 친환경건축 자재 사용대상이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바닥구조 기준 등 주택의 품질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4월 30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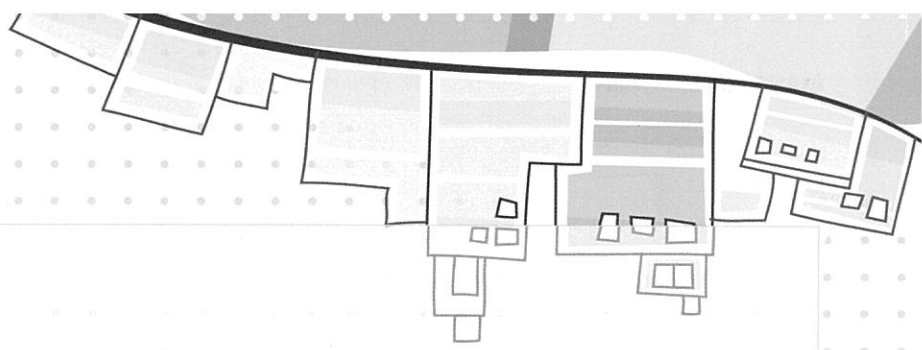
일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공동주택 바닥구조 기준을 강화해 일정두께와 일정 차단성능을 모두 만족하는 바닥구조 시공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한 공동주택 결로방지 기준을 신설한다. 더불어 실내 오염물질 저방출 건축자재 사용대상이 확대된다. 개정되는 세부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

국토교통부는 안전성을 확보하면서도 경제적인 철도 설계 및 시공이 가능토록 철도건설의 세부 기준인 '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을 대폭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일반·고속열차로 이원화된 이중체계를 통합하고 국내 운행열차의 실하중을 반영한 표준열차하중체계를 개발, 도입한다. 또한 터널 단면적, 선로 중심 간격, 시공기면폭, 승강장 길이 등 시설 규모를 최적화하여 현장 여건에 맞는 합리적·창의적 설계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번 규정의 개정에 따라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상 2020년까지 투자금액 중 약 2조6,000억원의 예산 절감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수준의 철도건설기준을 갖추게 되어 해외 철도시장 진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공포·시행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의 하위규정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준'을 마련하고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행되는 규칙 및 고시의 주요 제·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이 모든 용도의 신축 및 기존 건축물에 적용 가능하도록 인증기준이 마련되었다.

인증대상 건축물이 확대됨에 따라 인증등급도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여, 등급을 5개에서 10개로 세분함으로써 기존 건축물까지 등급화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간의 지속적인 단열기준 강화 등으로 건축물의 에너지효율이 전반적으로 향상된 점을 감안하여 인증등급 기준을 상향조정하였다. 또한 건축물 및 설비의 노후화를 감안해 에너지효율등급이 지속적으로 유지·관리 될 수 있도록, 인증 유효기간을 인증일로부터 10년 간으로 설정하였다. 이번에 시행되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준' 중 기준이 강화되는 부분은 진행 중인 사업 등을 고려하여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에너지 성능이 높은 건축물을 확대하고 건축물의 효과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의 대상건축물이 확대되어, 건물부문의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공포

국토교통부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법)'이 제정되어 5월 22일자로 공포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포하는 '특별법'은 공사중단으로 짓다만 건축물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2년마다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된 공사중단(착공신고 후 2년 이상)건축물을 대상으로 '정비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시·도지사는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건축물 정비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했다. 또한 공사재개에 필요한 비용보조, 세제감면 및 시·도지사 정비기금을 통한 재정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 법이 시행되면 전국에 산재한 약 860여개 동의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하

여 체계적인 관리와 정비가 가능해지고, 공사중단으로 인한 인근지역 주민 불편 등 위해요소 해소와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향후, 국토교통부는 세부 시행내용을 담은 하위법령(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1년 후인 2014년 5월 22일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

